

상담 윤리와 관련 법규들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문 성 원[†]

우석대학교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많은 상담서비스의 수요를 갖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며 상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 또한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급격한 양적 팽창에 가려져 있던 질적 규제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상담자들 내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관련 법규의 제정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이제 상담자들은 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상담자 행동이 실현되도록 윤리 규정을 개정 보완해야 할 상황에 놓여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정된 상담 관련 법규들의 관점에서 윤리 규정을 검토해보고, 관련 학회들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윤리규정에 대한 향후의 개선 방향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윤리 규정의 기반이 되고 있는 수련 모형 및 전제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그 다음 단계로서 상담 실무 관련 법규와 상담연구 관련 법규를 나누어서 윤리 규정과 비교하였다. 실무윤리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처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그리고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는 생명윤리법과 연구윤리지침에 입각해서 학회의 현행 윤리 규정을 확인하였다. 논의에서는 이원화된 현행 윤리 규정 체계의 문제점 및 현행법 보다 불완전한 윤리 규정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윤리, 개인정보보호법, 성폭력 처벌법, 생명윤리법, 연구윤리법

[†] 교신저자 : 문성원,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우석대학교 본관 1410호
Tel : 063-290-1377, E-mail : drswmoon@hanmail.net

상담 분야 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교수와 학생의 관계, 슈퍼바이저와 수련생의 관계,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와의 관계, 위원회와 평회원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의 첫 줄은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라고 되어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가 과연 이를 행동적으로 실현하게 만드는 규범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심리학적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한국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 이었다. 1991년 10월 19일 여의도 광장에서 시력장애를 앓던 20대 남자가 주말을 즐기기 위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흠뻑 차량을 몰고 전력 질주하여 23명의 사상자를 낸 일이 있었다(한겨레신문, 2013, 12, 13). 그 사건의 사회적 파장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¹⁾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불러일으켰고, 1985년에 보건사회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되어있던 정신보건법을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 재입법 추진하면서 마침내 1995년에 ‘정신보건법’ [법률 제 5133호, 1995. 12. 30., 제정]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7조에 의해 정신보건전문요원 제도가 만

들어졌다.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필두로 해서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법과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정신보건법에 더해서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된 것도 이 시기이다. 청소년육성법의 대처법인 청소년기본법[법률 제4477호, 1991. 12. 31., 제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동법 제57조에 따라 청소년상담을 목적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설립되었고 1995년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상담원 자격이 만들어졌다. 2004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119호에 의거해 마침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에 이르렀다. 90년대 초반에 우리 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남긴 여러 사회적 사건들은 위와 같은 관련법들의 제정을 통해 상담 분야 자체를 급성장시켰지만, 충분한 제도적 및 정책적 규제를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상담 분야의 급격한 양적 팽창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했다. 스스로 자신을 상담자라고 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단기 교육 후 상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자격증을 발급하여 이득을 취하는 여러 영리 단체들을 나타냈으나,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 상담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상담자들이나 기관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관련법 제정과 더불어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어온 상담 영역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고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연구 윤리 영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2004년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연구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도 연구 윤리에 대한 본격적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연구는 국내 연구이나 국제학술지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2006년에

1) 이 논문에서는 ‘상담’이라는 용어와 ‘치료’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단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철학이나 기본 입장을 고려하거나 혹은 고려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단어의 출처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단어를 선택했다. 즉, 해당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출처가 원래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와, 해외 원문에서 ‘therapy’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치료라고 번역해서 사용했으며, 나머지 경우는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결국 게재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연구가 우리 사회 전체의 응원을 받았던 만큼이나, 해당 논문의 조작 사실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사태를 통해 연구 윤리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 사회는 연구 윤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내 학회들이 윤리규정 조차 가지고 있지 않던 상태였지만 당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인해 학술 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대다수 일반인들도 ‘윤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해당 연구가 정부 예산을 토대로 이루어졌던 만큼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연구재단은 그 후속조치로서 연구윤리에 관한 여러 지침들을 만들었고 이는 국내 학회들의 윤리규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 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에서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연구자들 또한 연구윤리 의식에 있어 상당한 향상이 있기는 했으나, 데이터 조작,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등 연구자로서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연구 부정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한국연구재단, 2015).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학계 자체에 의해서보다는 정부의 지침이나 법적인 제재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었듯이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학계는 법적인 규제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가령, 법원은 제자의 학위 논문 학술지 등재에 자신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교수의 행위를 학계의 왜곡된 관행으로 판결했고(국민일보, 2010), 저작권 침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자기 것인 양’ 하는 기만적 요소가 있으면 표절이며 이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지만(남형두, 2015,

171쪽, 187-188쪽, 277쪽), 법원의 이러한 판결보다 학계가 더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 영역의 공식적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처음 인정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연구윤리 문제를 통해 윤리의 개념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후반부터였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전문적 영역이나 전문가의 윤리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미국심리학회의 경우 1892년에 학회가 만들어지고 1952년에 첫 번째 버전의 윤리규정이 채택되어 1953년에 발표된 후 1992년에 현행 방식의 윤리규정이 발표되었고 2002년에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1946년에 조선심리학회가 만들어졌고 2003년에 미국심리학회와 독일심리학회의 윤리규정을 토대로 한국심리학회 윤리규정이 발표되었고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 또한 2003년에 발표되었다.

아직은 윤리규정의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 대학들이 여전히 교과과정에서 윤리를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 의식으로서의 윤리적 태도가 회원들 혹은 학회 안에서 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다. 2017년에는 한국임상심리학회에 이어서 한국상담심리학회도 매년 회원들에게 온라인 윤리교육을 이수토록 요구하기 시작했으나 대학들이나 상담 수퍼바이저들이 윤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격한 교육을 학생들이나 수련생들에게 부과하지 않는 한 학회의 규정안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윤리 규정이 큰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1946년에 만들어진 조선심리학회는 1973년에 6명에게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하였고 1974년에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 및 상

담심리 분과회로 개칭하였으며, 마침내 1987년에 한국심리학회 산하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학회 발족하여 2017년까지 1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1342명, 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4737명에 이르고 있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그러나, 윤리규정이 제정된 2003년 이후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03년 이후 1급 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자는 1092명에, 2급 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자는 3935명에 해당한다. 즉, 1, 2급 자격증 취득자의 80%가 윤리규정이 제정된 2003년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만큼 지난 15년간 상담심리사의 숫자는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했지만 그 시간 동안 윤리적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2003년 이후 학회 내 윤리위원회 게시판에 등록된 질문의 숫자는 총 103개에 불과했고, 학회 내 상벌 및 윤리위원회 게시판에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가 만들어진 것이 2012년이였다. 윤리에 대한 교육과 논란이 충분히 무르익기도 전에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따라 빠르게 상담사가 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담사의 윤리 문제는 이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2003년에 윤리규정을 제정한 이후 2004년에 시행세칙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 연구윤리 부분을 따로 분리하였으며 원 규정은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으로 구분하여 2009년과 2018년의 개정을 거쳤고 시행세칙 또한 2017년에 개정되어 2018년에 시행되었다. 원 윤리규정에서 독립되어 제정된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연구진실성 심사 운영세칙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고, 개정된 세칙은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대학원 석사 과정 교과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과목으로 상담윤리 및 법 관련 과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

담 전공 교수들도 동의를 하고 있었고(이숙영, 김창대, 2002), 한국상담심리학회 인준 과목 분류에도 상담윤리가 상담관련 과목에 포함되어 있었으며(최아룡, 2012), 올해 들어 전국대학상담센터협의회에서는 대학상담센터 상담윤리 가이드북을 발간했지만(김인규, 2018),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의 학술 논문 검색에서 윤리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한국상담심리학회 논문 중 상담 윤리에 관한 것은 8편에 불과했고 실제로 윤리를 대학원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거의 없었다. 이는 윤리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이 학회 전반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예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심리사 윤리강령과 연구 윤리 모두를 포함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 규정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재검토되고 재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학의 교육 과정이 필수적으로 윤리를 포함하도록 하는 노력과 학생회원들까지 편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윤리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일이다.

결국에는 연구 조작으로 밝혀진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연구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윤리 관련 법규들이 제정되고 그로 인해 학회들이나 기관들이 윤리 규정을 가지게 된지 이제 막 십여 년이 되었고, 최근 들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미투 운동의 여파로 인해 상담자와 환자 혹은 내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이제야 수면위로 부각된 것처럼, 우리 사회 안에서 윤리에 대한 논쟁은 법적인 강제 이후에 그 뒤를 따라오는 모습을 하고 있다. 즉, 2004년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년에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되면서 거의 모든 학회

가 윤리 규정을 갖추게 되었고 기관들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게 되었으며, 2011년에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는 한국상담심리학회도 상담심리사 윤리 강령 안에서 이 법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에 제정되었고,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은 2013년부터 어린이집 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모든 학생들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으나,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비로소 실제 현장의 내담자-상담자 관계 맥락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비록 학회의 윤리 규정이 사회적 관심 속에서 최근 들어 제정된 법규들을 뒤따라가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러한 법규의 제정 여부와는 별개로, 연구나 상담의 참여에 대한 내담자의 동의, 표절, 내담자 정보의 보호, 상담관계에 대한 내용은 상담사 윤리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윤리’에 대한 교육 자체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최근 들어 관련 법규들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담사들은 그 법규들의 내용도 해당 윤리 규정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강제성을 수반하는 만큼, 여러 관련 법규들이 속속 제정되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상담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 법규들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법규들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윤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학회의 윤리 규정들을 관련 법규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재검토해

보고 국내외 유관 학회들의 관련 규정을 비교 참고하여 향후 윤리 규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 규정들이 기반 해 있는 기본적인 관점과 주요 개념들 그리고 교육 및 수련 모형을 국내외 유관 학회들과 비교하여 검토하였고, 그 다음으로 상담심리사가 알아야 할 유관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응되는 학회 내 윤리 규정의 내용과 이에 관한 타 학회들 규정을 비교하며 향후 윤리 규정의 어떤 부분이 구체화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학회의 윤리 규정이 상담사 실무와 연구에 관한 부분을 구분해서 다루고 있으므로 실무와 관련된 부분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련성 속에서 그리고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연구윤리법과 관련해서 비교하였다.

상담심리학회 윤리 규정의 구조와 개념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 규정과 국내외 다른 학회들, 예를 들어 한국심리학회나 한국상담학회 또는 미국심리학회 및 미국상담학회 윤리 규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실무와 연구에 대한 규정을 각기 독립된 규정으로서 다루고 있는 점이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 규정은 크게 보았을 때 ‘상담심리사 윤리 강령’과 ‘연구 윤리 규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상담실무와 직결된 내용은 상담심리사 윤리 강령에 의해서 다루어지나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윤리 규정에 의해서 다루어지며 각각은 별개의 위원회가 관할한다. 한국 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윤리 강령 안에는 국내외

유관 학회들의 규정들과 달리 연구 및 출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1950년대 초반 이후로 윤리 기준을 만들어서 유지해온 미국심리학회는 심리학자가 과학자, 교육자, 전문가의 역할을 모두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심리학회 윤리규정에서는 임상, 상담, 학교 심리학 실무에 더해, 연구, 출판, 교육, 수련, 사회적 개입, 자문 등을 모두 다룬다(Breckler, 2005).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윤리 강령은 전문성, 성실성, 사회적 책임, 인간 존중, 다양성 존중의 원칙을 따르며, 전문가로서의 태도, 사회적 책임,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상담 관계, 정보의 보호 및 관리, 심리평가, 수련 감독 및 상담자 교육, 윤리 문제 해결 등의 8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에 비해 미국 심리학회 윤리 규정은, 일반원칙에서 유익성과 무해성, 정의,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추구하며, 나머지 10개의 영역에서는 윤리적 문제의 해결, 유능성, 상담 관계, 비밀 보장 및 사생활 보호, 광고 및 공적 진술, 기록 보관 및 비용, 교육 및 수련, 연구 및 출판, 평가, 치료에 대해서 다룬다. 미국 상담학회는 윤리적 행동의 기본 원칙을 자율성, 무해성, 유익성, 정의, 충실성, 진실성이라고 보고, 상담관계,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전문적 책임, 다른 전문가들과의 관계, 평가 및 해석, 지도감독 및 수련과 교육, 연구 및 출판, 원격 상담 및 사회적 매체, 윤리적 문제의 해결 등의 9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윤리 규정을 갖추고 있다.

실무에 대한 윤리와 연구에 대한 윤리가 별개의 규정으로 다루어지고 별개의 위원회에서 관할된다는 점은 각 영역을 더욱 심층적인 전문성에 입각해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

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둘을 통합시켜서 관리하는 규정이나 위원회가 없다는 점은 학회 안에서나 상담자 개인 안에서 이 둘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실무적 전문성과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모두 요구받기 때문에 상담자들은 실무자로서의 정체성과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가져야하며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또 배타적으로 가질 수 없다. 그러나 현행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 규정 체계는 마치 상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둘 중 하나의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있다. 학회 전체를 아우르는 윤리 규정의 틀 안에서 실무 윤리와 연구 윤리가 포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두 개의 윤리가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윤리 조항은 실무 윤리와 연구 윤리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공표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각각의 별개 규정들을 보며 그것이 같은 내용에 대한 다른 조항이라는 점은 그저 아는 사람들만 아는 내용으로 지나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소한 듯 보일지 몰라도 현재의 분리된 규정 체계가 학회 전체의 통합성을 방해하고 통합된 정신으로서의 윤리를 상담심리사들이 가지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상담 실무에 관한 윤리이든 연구에 관한 윤리이든 결국은 한 사람의 상담자가 모두 갖추어야 할 윤리라는 점이 현행 규정 체계에서는 간과되어 있다. 또한, 두 가지 윤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학회나 혹은 회원 개인들은 윤리와 관련된 딜레마를 겪게 되거나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상황을 겪을 경우 외국 학회의

경우처럼 그냥 윤리위원회에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원회를 상대로 별개의 절차를 진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이외에 미국 학회들과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 규정이 일반 원칙에서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첫째, 한국상담심리학회와 달리 미국 학회들의 경우 일반 원칙으로 ‘정의’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다. 상담심리학 안에서 사회적 정의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지만 대부분의 정의들은 자원에 대한 평등한 배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는 자원이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하게 배분될 때는 기회와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되고 평등성을 보장되도록 돕기 위해, 불공정한 관행, 구조, 정치를 영속화시키는 사회 제도, 정치 및 경제 체계, 정부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Fouad, Gerstein, & Toporek, 2006, p. 1).

정의에 관해, 미국상담학회 윤리규정은 개인을 공정하게 대하고 공정성과 평등성을 조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았고, 2014년에는 상담자의 핵심적인 직업 가치 중 하나에 사회적 정의의 증진을 포함시켰다. 미국상담학회는 사회적 정의란 내담자, 학생, 상담자, 가족 공동체, 학교, 직장, 정부, 다른 사회적 및 제도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억압과 부당성을 끝내기 위해 모든 사람들 및 집단의 평등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미국심리학회 윤리규정은, 심리학자가 행하는 과정들, 절차들, 서비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공정성과 정의라고 보았으며, 심리학자는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편파, 유능성의 경계, 전문성의 한계가 불공정한 심리학 실무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미국상담학회 운영위원회는 2017년 사회적 정의와 인권에 관한 세 가지 성명을 승인했다. 이들 성명에서는 기본 인권,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 차별과 괴롭힘의 예방의 세 가지에 관한 입장을 다루며, 첫째,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공중 화장실에 접근할 권리와 자신의 정체성에 맞도록 시설을 변화시키는 권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 미국상담학회가 연대하며, 둘째, 이민자와 난민 및 모든 종교적 공동체와 미국상담학회는 연대할 것이며, 셋째, 성적소수자의 보호를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괴롭힘, 즉, 언어적, 신체적, 성적, 정서적 및 심리적 괴롭힘 모두에 대한 차별금지과 예방을 위해 미국상담학회는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발표했다. 세 번째 입장에서 미국상담학회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유일무이하며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권리나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그 어떤 형태의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든 다른 사람을 강요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회의 모든 성원들은 내담자, 학생, 가족, 공동체, 학교, 직장, 정부, 기타 다른 사회적 및 제도적 시스템들에 영향을 미치는 억압과 부당함을 끝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한 치료의 옹호를 도울 것이라고 선언했다(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CA, 2017). 미국상담학회 산하에는 ‘사회적 정의를 위한 상담자들’ 분과가 별도로 있다.

물론, 한국상담심리학회 규정 또한 윤리강령의 첫 줄에서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한 심리적 조력활동을 통해, 개인이 자기를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라고 언급하며 사회적 정의를

내용적으로는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신을 윤리 강령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상담자들이 위의 전문을 읽는다고 해서 이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상담자들의 현실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과 개인이 자신을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하기만 할 뿐이다.

정의를 대하는 입장에서 미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의에 관한 이러한 극명한 입장 차이는 미국문화의 개인주의적 특성과 한국문화의 집단주의적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획일성이 강하고(김영명, 2011),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권위주의적 사회이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주변의 사회적 압력이나 문화적인 분위기 때문에 생각과 달리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나은영, 1995).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의존성 및 집단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므로, 이런 집단주의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집단 안의 사회적 영향은 불평등하게 분배되며 일방적인 방식으로 발휘된다고 믿는다(Moscovici, 2010).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사회관계 속에서의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며 규범 및 사회적 연대가 개인의 특성보다 더 중요한 행위의 원동력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정의보다 사회적 연대가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고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윤리규정안에서도 사회정의에 관한 소극적 입장을 띠게 할 수 있다.

사회적 정의에 관한 문제는 비단 학회들과 외부인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회 내부 회원들 간의 갈등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학회 차원의 계속적인 논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상담심리사에 대한 교육 및 수련 모형들과 한국상담심리학회의 관점

연구에 관한 윤리와 상담 실무에 관한 윤리가 별도의 서로 구분된 규정으로서 제정되어 있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의 특징적 구조는 상담자를 과학자이자 실무자로서 양성시키고자 하는 상담사 수련 모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담심리학을 비롯해서 전문 심리학(professional psychology) 분야에서 현재 가장 주요한 교육 및 수련 모형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과학자-실무자 모형이다. 과학자-실무자 모형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미국이 참전 군인들에 대한 치료를 위해 많은 수의 정신건강 실무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1949년에 열린 Boulder 회의에서 처음으로 도출되었다(Baker & Benjamin, 2000). 임상심리학 대학원생의 교육과 수련에 관한 첫 번째 본격적 논의인 Boulder 회의에서는 임상심리대학원생은 연구의 수행과 전문 심리학 실무 모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고 같은 정도의 유능성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Norcross & Castle, 2013). Boulder회의에서 논의된 것이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교육과 수련이었던 만큼 이 회의에서 결론된 과학자-실무자 모형은 임상심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상담심리학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수련 모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과학자-실무자 모형이 심리학 실무자들을 준비시키는데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다는 일부 훈련자들과 실무자들의

불만이 등장하면서 1973년 심리학 대학원생의 훈련에 관한 Veil 회의에서는 실무자 모형이 등장하였고 이어서 실무자-학자 모형이 등장하였다(Gimpel & Merrill, 2008, 109쪽). 실무자 모형은 대학원 교육의 주된 초점을 전문적 실무에 두며, 실무자-학자 모형은 학생들이 실무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강조하지만 실무자 모형 프로그램에서보다는 학술적 업적의 창출을 더 많이 강조한다. 과학자-실무자 모형과 실무자-학자 모형은 각각 Boulder 모형과 Veil모형으로 불리기도 하며 서로 대비되는 관계에 있는데, 미국의 경우 과학자-실무자 모형에 입각한 대학원 박사 학위 프로그램이 Ph.D 학위를 수여한다면 실무자-학자 모형에 입각한 대학원 박사학위 프로그램은 Psy.D 학위를 수여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상담 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학들은 이에 부응해서 상담에 관한 다양한 학위 과정들을 만들었고 상담심리학자의 교육에 관해 실무자 모형 혹은 실무자-학자 모형인 것으로 보이는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규정은 처음에는 연구윤리와 상담사 윤리가 하나로 통합되어있었고 현재는 분리되어 있으나 왜 이러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상세한 배경 설명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 과정이 학회가 가지고 있는 수련 모형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일반 회원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약, 윤리 규정과 관련된 그러한 변화 추이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지 못한 회원들의 경우라면 학회에서는 처음부터 두 개의 분리된 윤리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인간사회에는 때로는 안정적이고 때로는 유

동적이고, 때로는 보편적이고 때로는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한 특정한 사회에서 통하는 어떤 행동의 규범이 일종의 전통, 풍습, 관습으로서 막연하게나마 존재하며, 개인의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관습이 있다. 그것에 비추어 옳고 그른 행동을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행동을 실천에 옮기며, 그에 맞는 행동을 우리는 ‘윤리적’이라고 한다(박이문, 2007).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두 개의 규정이 별개의 규정으로서 존재하고 각각 별개의 위원회가 이를 관할하고 있음을 단순히 드러내고 있을 뿐인 현재의 윤리 규정 체계는 윤리란 통합된 하나의 규범 의식이며 이러한 규범은 마땅히 수련 모형의 방향성에 기반 해 있어야 함을 부인한다. 즉, 상담자로서 어떠한 수련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합의된 방향이 있을 때 그에 따른 행동 실천 모형인 윤리 규정이 수반되는 것인데, 현재의 이원화된 윤리 규정 체계는 합의된 수련 방향 없이 산발적인 행동 실천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도 별개 규정과 별개 위원회의 존재를 통해 실무자를 위한 윤리 규정과 연구자를 위한 윤리 규정을 그저 구분해놓고 있는데서 그치기보다는 학회가 수련 모형과 관련해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학회가 규정하는 상담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상담 실무 관련 윤리 규정들과 관련 법규들 간의 관계

상담관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담에 대한 우리 사회 안에서의 수요가 짧은 시간 안에 급증하면서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성적인 관계는 이제 학회 안을 벗어나서 일반 대중들도 크게 관심을 갖는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임주환, 2016). 2018년 한 검사의 검찰청 내부의 성폭력 실태에 대한 폭로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BBC, 2018, 1, 31; 연합뉴스, 2018, 2, 26) 이제 사회의 전 분야로 번지면서 정신과 의사와 환자간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폭로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동아일보, 2018, 3, 27). 환자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의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했다(한겨레신문, 2018, 3, 28). 상담가와 내담자의 성적 관계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자신을 정신분석가라고 칭하는 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내담자들이 형사 고소를 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한겨레신문, 2016, 3, 14). 피해자들은 정신분석가를 준강간,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고소했다.

심리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비윤리적인 성적 관계는 미국의 경우 점점 더 많은 주가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이를 중범죄로 보는 주도 많다(Pope, 2001). 이를 중범죄로 보는 주들은 심리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성적 착취와 관련된 형법 조항을 따로 가지고 있다. Pope(2001)에 따르면, 각 주들이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 적법성 여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심리상담을 받는 사람이 상담자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들

의 직업적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상담자의 성적 착취 행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 10258호, 2010.4.15., 제정]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 처벌법)은 계속 개정되었는데[법률 제15156호, 2017.12.12., 일부개정],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02호, 1994.1.5., 제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상,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이 상담자에 의해 모두 가능할 수 있는데, 위의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명시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성폭행으로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서 강간죄로 해당 정신분석가를 고소할 수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해당 정신분석가를 준강간죄로 고소했다(한겨레신문, 2018, 3, 28).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의미하며, 한국 형법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준강간죄로 처벌한다. 위 사건의 피해자들은 공황발작, 자살충동, 대인 공포증 등을 겪었지만 해당 피해 상황에 대한

현행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었다면 중대한 처벌을 받았을 문제의 정신분석가는 1심에서는 집행유예 처분을 2심에서는 무죄 처분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대법원 상고여부는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행 법 안에서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전이 현상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밖에는 성적 착취를 한 상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성적 착취가 더 이상 법적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을 위한 범사회적 공감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단체와 기관들을 모두 설득하는 상담심리학계의 적극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는 먼저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성적 행동과 관련하여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을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수준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며,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토론회나 학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이와 관련된 해외 법규 등을 국내에 소개하는 등 상담자의 성적 착취에 관한 문제의식을 범사회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적극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상담심리사는 내담자 및 내담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포함한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되며, 성적 관계를 해서는 안 되고, 이전에 연애 관계 또는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며, 내담자와의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 적어도 3년 동안은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하며 그 후에도 가능하면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는 갖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기간에 대해 한국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2016)와 미국심리학회는 2년(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1992), 미국상담학회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ACA, 2014). 기간에 관해 가장 강력한 규정을 갖고 있는 미국상담학회는 성관계에 대한 규정을 대면관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관계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심리사 윤리규정에서는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는 안 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 사항에 대한 예시가 없다. 상담관계를 종료한 후 3년이 지난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전 내담자와는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없다.

가령 미국심리학회의 경우 상담관계 종료 후 최소한 2년의 기간을 시간적 간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2년이 경과한 후라고 하여도 그 이후가 착취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윤리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취의 요소가 없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담이 종료된 이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당시 치료의 성격, 기간, 강도, 종료 당시의 분위기, 내담자의 개인적인 과거사, 내담자의 현재 정신적 상태,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 치료 과정에서 치료자가 치료 후의 성적 혹은 낭만적 관계 가능성을 암시하며 한 모든 말 등의 견지에서 모두 고려가 필요하다(APA, 1992). 미국상담학회는 이 부분에 관해 가장 강력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상담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상담관계가 아닌 로맨틱한 혹은 성적인 관계를 시작하려면 그 상호작용 또는 관계가 착취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관계가 전 내담자에게 여전히 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 문서화된 형태로 입증을 해야만 한다(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CA, 2014).

심리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한국상담심리 학회의 전체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중 80%가 윤리규정이 제정된 2003년 이후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상담자의 숫자도 덩달아 엄청난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내담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상담에서 발생하는 전이 현상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학회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성적 착취에 관한 학회의 규제가 회원들 사이에서 중요한 윤리적 입장으로 견지되게 되고 이러한 태도가 누적이 되면 그때는 상담자의 성적 부적절 행위에 관한 법률 제정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2011년 공포되었고[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다[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법률 제10465호 2조 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일반 정보, 소득, 재산상황, 신용, 부채 등

의 경제 정보, 학력, 성적, 병역, 직업, 자격 등의 사회 정보,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 접속 IP, 로그(log) 등의 통신 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정보 등의 민감 정보 등이 모두 개인정보의 예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컴퓨터로 처리되는 DB 형태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신청서 서식 등 종이 문서에 수기로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한다. 따라서, 상담신청서 등을 비롯하여 상담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상당수의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 제3 자 제공 시에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처리목적 달성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의 4가지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5조 가항 (1)호에서 “상담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항 (2)호에서 “상담심리사는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을 시키자면 상담 과정에서 얻어지는 자료의 보관과 파기, 그리고 제 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문제로 나누어서 다루어질 수 있다. 먼저 자료의 보관에 관해서, 상담 과정에서는 여러 형태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고 이들은 보관의 대상이 된다. 상

담신청서에 기록되는 내용에는 여러 종류의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담의 내용은 건강 범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상담심리사 윤리 강령 5조 나항 (5)호에서는 이 정보들의 보관에 관해서, “상담심리사는 면접기록, 심리검사자료, 편지, 녹음 파일, 동영상, 기타 기록 등 상담과 관련된 기록들이 내담자를 위해 보존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상담기록의 안전과 비밀보호에 책임을 진다”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심리학회 윤리규정은 이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심리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나 기록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고 이들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에 서비스 수혜자가 동의하지 않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면, 심리학자는 개인 식별 정보의 유입을 피하기 위해서 암호화나 다른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2016).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에서는 자료의 보관에 관한 보다 구체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가령 사례 발표를 위해서 내담자 개인정보 파일을 온라인으로 입력해서 휴대용 저장장치에 들고 나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담사 윤리 강령에는 자료의 보유 기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슈퍼비전을 받는 상황, 사례 발표회에서 발표를 하는 상황, 기타 여러 목적으로 다른 상담자에게 내담자에 관해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개사례 발표회의 경우 내담자 자료가 동시에 다수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의 보호와 자료의 파기가 더욱 중요하다.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에는 마지막 경우인 다른 상담자에게 내담자에 관해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에 대한 내담자 동의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어떤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것인지에 관해서 내담자에게 정확히 밝히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담 과정에서 나눈 이야기 중 어떠한 것을 다른 상담자에게 공개할 것인지에 관해서 내담자에게 명확히 밝히고 이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다른 상담자에게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윤리 규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연구 윤리 규정들과 관련 법규들 간의 관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법률 7150호로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법이 제정된 가장 큰 이유는 1997년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면서 동물 복제가 인간 복제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었다. 생명윤리법 제정을 통해 생식 세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생명윤리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 규제 대상이 인간 대상 연구 전체로 확대되었는데, 이후 개정된 생명윤리법은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며,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법률 제11250호, 2012. 2. 1. 전부개정] 시행 2013. 2. 21. 생명윤리법은 이후 계속해서 개정되어왔지만 상담심리 분야와 관련될 수 있는 법 개정은 인간 대상 연구 전체로 생명윤리가 확대된 2012년 법 개정 부분이다.

인간 대상 연구는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에 근거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에는, 첫째,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둘째,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의 행동 관찰이나 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얻는

연구 혹은 그 밖에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를 접촉하고 조사 및 관찰 등을 수행하는 연구, 셋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연구대상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는 않지만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넷째,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로서 실험적 연구와 조사 등을 통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 복합적으로 수행되거나 관찰 연구가 포함된 연구 등 앞서의 연구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가 포함된다. 따라서, 상담심리학을 포함한 심리학 관련 연구들 및 사회과학 연구 전반이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하며, 생명윤리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생명윤리법 상 인간 대상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데 연구계획서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 배경(선행연구 포함), 연구대상자 선정, 예상 수, 산출 근거, 모집 및 동의 과정 등에 관한 사항, 연구 내용 및 방법, 조사 도구(해당하는 경우) 등 연구로 인해 수집되는 자료 및 정보 등 관찰 항목에 관한 사항, 연구로 인한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 보상 등에 대한 사항, 연구대상자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평가 기준 및 방법, 자료 분석 등 통계적 측면에 관한 사항, 연구 수행 장소 및 연구 참여기간,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기관위원회 또는 공용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상담심리학회 연구윤리규정에서는 제7조 기관의 승인에 관해, 기관의 승인이 요구

될 때는 연구 수행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만 읽고는 상담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기관 승인이 요구되는 연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 이에 관해 생명윤리법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라고 할지라도 각 기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 내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면제를 확인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면제를 받으려면, 연구계획서를 해당 기관의 기관위원회 또는 공용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수의 상담 관련 연구들이 생명윤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연구자들도 있음을 감안하여 연구윤리규정 제7조는 보다 구체적이 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기관위원회가 없는 기관에 근무를 하거나 독립적 실무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관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규정은 미국상담학회 규정이다. 미국상담학회는 상담자가 독립 연구를 시행하고 있어서 기관위원회 심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구의 계획, 설계, 시행, 보고 등에 관한 검토와 관련된 윤리 원칙들과 법규들을 기관위원회 심사를 받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상담학회의 이러한 규정은 한국상담심리학회 또한 참고할만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7조 중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대학들이 연구윤리에 대한 교과과정을 충실히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확한 정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회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간 대상 연구의 동의에 관해서도 한국상담심리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법 제16조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의 동의에 관해서도 동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아동, 즉 18세 미만의 사람은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생명윤리법에서는 동의의 내용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기밀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해놓았지만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는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정보의 종류와 기밀성에 대한 내용은 생명윤리법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과도 관련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이어서 보다 세심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을 모두 준수하려면 대상자에게 정확히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 미리 알려서 이에 동의할 경우 정보를 얻어야 하며, 이렇게 해서 얻어진 정보가 어떻게 보관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한다.

상담심리관련 연구를 하는 경우 연구자들이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제18조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조항과 제19조 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항이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연구를 통해 얻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2차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는, 1차 수집의 주체가 다른 연구를 하려는 경우 새로 수행하려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며, 1차 수집의 주체가 아닌 연구자가 하려는 경우 1차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제

공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19조에 따르면 연구가 종료된 경우는 관련 기록물들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한번 연구 자료를 획득하면 그것이 마치 연구자의 영구적인 사유재산인양 혼동하는데 응답자들의 정보가 포함된 이상 그 자료의 주체는 응답자이기 때문에 응답자나 기관에 의해 사전에 허락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해야하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06년에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연구 논문이 사이언스지에서 게재 취소되고(Kennedy, 2006), 연구비 지원 및 관리가 쟁점화 되면서, 정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2007.2.8., 제정]. 그러나 2007년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연구윤리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자 할 때 실질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교육부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 2011. 6. 2. 일부 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60호, 2012. 8. 1., 일부 개정][교육부훈령 제39호, 2014.3.20., 타법폐지][교육부훈령 제60호, 2014. 3. 24., 제정][교육부훈령 제153호, 2015.11.3., 일부개정] (한국연구재단, 2015).

여러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며,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에서는 자신의 연구 결과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시효를 폐지했고, 조사위원회의 외부 조사위원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교육부훈령 제153호에서는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내렸고,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등 관련 용어를 다양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구체화하였으며,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향상시켰고, 연구 부정행위 검증결과는 해당 연구자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고(안 제18조),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체 조치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개별 대학의 책무성 강화(안 제26조)를 확보하였다.

훈령 제153호의 내용은 다른 법규들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조항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는 개인정보법 및 생명윤리법과 관련이 되어 있고,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은 생명윤리법과 관련을 가지며,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것은 저작권법 및 헌법의 일반인격권과 관련되어 있다. 제5조의 내용들은 다른 법규들과 중복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훈령 제153호의 전체 조항들이 기반 해 있는 원칙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그런 만큼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은 이 원칙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훈령 제153호는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관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중복게재의 대표적인 유형은 데이터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한 논문에서 5개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다른 논문에서 그중 3개를 또 다시 결과로 제시하는 것이다(황은성 등, 2014). 상담

심리 연구자가 한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소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원자료가 어떤 것이었으며 그 중 어떤 것들을 발췌해서 사용했다는 점을 각각의 논문 모두에 명확히 밝혀야만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훈령 제153호는 표절에 관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8조에서는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고 보고,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고 보았고, 논문의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 문체와 연구 결과가 다를 경우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만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표절에 관한 훈령 제153호 제12조와 학회 규정 제18호에서 중요한 점은 표절의 기준을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하지 않는다는 데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이디어도 보호의 대

상이 되며 간행이나 미간행이냐의 여부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공간(公刊)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은 공간된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보다 더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표절에 해당한다(남형두, 2009). 남형두(2009)에 따르면 오히려 공간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은 일종의 완전범죄를 노리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고 보았다.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혹은 독창적 아이디어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기 것인 양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남형두, 2015, 233쪽), 저작권 침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더라도 표절행위로 인하여 표절 당한 자에게 돌려져야 할 명성, 평판, 신용 등 명예가 표절행위자에게 돌려짐으로서 결과적으로 표절당한 자가 얻어야 할 명예를 잃게 되므로 이른바 소극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남형두, 2015, 187-188쪽). 명예훼손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윤리 규정 시행 세칙들과 관련 법규들 간의 관계

민법이나 형법에는 실체법인 이들 법들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인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있듯이, 윤리 규정 또한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시행 세칙을 갖추고 있다. 현재 한국상담심리 학회의 시행 세칙들 중 주목할 부분은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의 경우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와 제5조 제소 건 처리 절차 조항들이다. 미국상담학회의 경우 위원회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조항들이 있으나 한국상담심리학회의 경우 이에 관한 관련

조항들이 없다. 따라서,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윤리 위원 선정의 공정성 유지가 윤리위원회의 몫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는 제소인 혹은 문제제기를 당하는 피소인의 몫이 되며 만일 제소인이 판단하기에 위원 선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관건이 되는 윤리적 문제와는 별개의 심리적 부담을 안고 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답변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어도 달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처리 절차가 없다.

또한, 상담심리사 강령 제5조에서는 학회의 절차 진행이 전자 우편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심리학회의 경우 보안을 이유로 윤리적 문제에 관한 전자 우편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윤리위원회 웹사이트에는 관련된 전자 우편 주소가 없고, 미국상담학회의 경우는 시작은 전자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나머지 절차는 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민감정보를 전자 우편으로 처리하고 전자 우편으로 전송된 민감정보가 전자 우편 계정 안에 남아 있는 것은 해킹 등의 문제가 있어서 국제 학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정보의 경우 목적과 보관기간이 명확히 동의된 상태에서의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역시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윤리적 쟁점과 관련된 전자 우편 소통에 관해서는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논 의

독일의 법철학자인 Georg Jellinek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으로서 규정하며 윤리와 법의

관계에서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Jellinek, 1908). 즉, 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행위의 최소한의 수준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윤리적 행동이란 단순히 법을 따르는 것 이상의 행동을 말한다. 따라서, 윤리는 변화하는 시대의 법 정신 그 이상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그런 까닭에 학회의 윤리 규정은 사회 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제정되고 개정되는 법이 강제하고 있는 행동들 이상의 정신과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역시 늘 변화해야 한다. 법과 윤리 모두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장치이지만, 법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원칙이고, 윤리적 행위란 모든 사람이 따라야만 하는 행위적 규범이기 때문이다(박이문, 2007). 따라서, 윤리는 적어도 법에 규정된 것은 반영해야 한다.

법과 윤리의 관계에 관해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 바가 없지만, 한국심리학회나 미국심리학회 혹은 미국상담학회의 경우 앞서 언급한 관점을 윤리 규정상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심리학회는 윤리 규정 제 2장 윤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지침 제 4조(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에서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즉, 현행법이 윤리규정보다 엄격한 수준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면 현행법이 윤리 규정보다 우선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심리학자는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미국심리학회 또한 학회의 윤리 규정이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더 엄격한 행동 강령을 확립하고 있지만 심리학자는 반드시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APA, 2016). 미국상담

학회는 상담자 윤리와 관련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증진시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내담자와 협력해야 하며 이는 윤리적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선택과 상황의 맥락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윤리적 기준이나 원칙들에 대한 위반이 반드시 법적 위반에 해당해야만 한다고 보지 않았다(ACA, 2014). 이는 상담자는 늘 법이 강제하는 그 이상의 수준에서 매 순간 모든 상황이 정말로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그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이 내리는 것이 진정한 윤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법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도 윤리적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미국상담학회의 관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적인 도덕 행동이 윤리적 인식을 만들고 이러한 윤리적 인식에 기반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대학 교육과 학회의 규정이 교육 및 수련과정을 통해 윤리적인 상담심리사가 탄생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실정법에 의한 강제 규범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에 관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회의 규정들이 개정되어가고 있는 편에 가깝다. 즉,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이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극한의 학교 폭력 상황들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이어지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과 전문상담교사가 탄생했고 이러한 전문 전문직 종사자의 탄생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또한 치료의 대상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며 자칭 타칭 상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증가시켰고,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연구 조작 사태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 움직임은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의 윤리적인 행동 여부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만들어내며 학회 내 윤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이어졌다.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미투운동의 여파는 상담 영역으로도 확산이 되어 이제 수면 아래에 있던 상담자들과 내담자들의 성적 관계는 일반 대중의 공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결국은 학회 내부에서의 적극적인 논의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기보다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그 반대인 경향이 있다.

‘나’ 보다는 ‘우리’가 강조되고 조밀한 인간 관계 네트워크에 의해서 회원들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어찌 보면 법적인 강제에 의하지 않고 학회 내부에서 먼저 강력한 윤리적 행동 지침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보다는 무엇이 더 동조적인 행동인가에 대한 결정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므로 늦은 감은 있지만 학회를 뛰어넘는 법적인 규제의 움직임을 학회 내부의 강력한 윤리 규정 제정 및 개정의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인 대처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 규정들이 관련을 가질 수 있는 법들을 검토해보고 이 법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 규정들이 생각해보 수 있는 부분들을 역으로 생각해 보는 방식으로 윤리와 법의 관계를 검토했다. 그 결과로서, 현행 윤리 규정 조항들이 관련 법 보다 미비한 부분을 정리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 표 1이다.

상담심리 실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았

고, 상담심리 연구와 관련해서는 생명윤리법, 연구윤리법을 살펴보았다. 표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던 점은 관련법에 비해 학회의 규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점이었다. 학회의 많은 규정들은 해외 학회의 규정들을 그대로 변안해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해외의 경우 대학에서 이미 윤리에 관한 교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규정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낯설지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이러한 교육을 교과과정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이 학회의 규정만 보아서는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법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 예시 및 조항들이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규정에서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 규정과 관련 법규들을 비교하면서 보다 더 확연하게 드러난 점은 교육 및 수련에 관해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어떠한 교육 및 수련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호성이었다. 상담 실무를 위한 윤리규정과 상담연구를 위한 윤리규정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의 역할과 실무자의 역할은 한 상담자 내부에서 항상 조화되어야 하는 두 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마치 상담자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양쪽 모두이든 어느 한쪽이든 선택 가능한 역할처럼 보여진다. 과학자-실무자 모형, 과학자-학자 모형, 실무자 모형 중 어떤 모형이 학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모형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 없다면 이 분야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무 윤리와 연구 윤리를 통합시킨 전체 규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각각에

표 1.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 규정과 관련 법률의 내용 그리고 보완되어야 할 내용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	관련 법률의 내용	보완되어야 할 내용
<p>4조 나. (1) 상담심리사는 내담자 및 내담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포함한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p> <p>(2) 상담심리사는 내담자 및 내담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과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p> <p>(3) 상담심리사는 이전에 연애 관계 또는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p> <p>(4) 상담심리사는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 적어도 3년 동안은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그 후에도 가능하다면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는 갖지 않는다.</p> <p>(상담관계 종결 후 3년이 지난 후 그 관계가 착취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p>	<p>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	<p>상담이 종료되고 일정한 햇수가 흘렀다고 하더라도 로맨틱한 관계를 시작하려면 그 관계가 내담자에게 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할 것</p>
<p>5조 가. (1) 상담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관리에 있어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한다.</p> <p>(5) 상담심리사는 면접기록, 심리검사자료, 편지, 녹음 파일, 동영상, 기타 기록 등 상담과 관련된 기록들이 내담자를 위해 보존된다는 것을 상담기록의 안전과 비밀보호에 책임을 진다</p> <p>(윤리규정에는 자료의 보관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고, 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부분이 아예 없음)</p>	<p>개인정보보호법</p>	<p>내담자 개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나 기록 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 개인 식별 정보가 이에 포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암호화 기술을 포함할 것</p> <p>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내담자 개인 정보를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옮기거나 이메일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전송하지 않도록 할 것</p> <p>다른 상담자에게 내담자에 관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어떤 내용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구체적인 공개 범위를 밝히고 서면 동의를 받을 것</p>
<p>7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p> <p>(아동연구에 대한 법적 대리인 동의에 관해서 동의 내용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기밀성에 관한 사항이 생명윤리법에서는 명시되어있지만 학회규정에는 없고, 연구를 통해 얻은 개인 정보를 2차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의 절차에 대한 조항이 학회 규정에는 없음)</p>	<p>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p>	<p>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할 것</p> <p>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p> <p>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동의 절차에 대해서 생명윤리법을 준수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야할 것</p> <p>인간데이터를 사용하는 연구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2차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안내할 것</p> <p>보관기관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괴하도록 할 것</p>
<p>18조 (표절) ①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p> <p>②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p>	<p>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p>	<p>표절은 저작권과 인격권 모두에 의해서 접근되는 문제임을 명시할 것</p> <p>저작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는 표절 행위, 공간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도용에 관한 표절 행위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p>

대한 조항들을 정교화시켜서 다루는 것이 향후의 윤리 규정 보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과학을 완전히 배제한 실무 혹은 실무를 완전히 배제한 과학이란 결국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행 시스템에서는 회원들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과학과 실무가 서로 연계성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쪽의 정체성만을 배타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잠재적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서로 일관된 생각을 담고 있기에 하나의 윤리 규정에 관한 다양한 적용 예로서 다루어지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조항들이 현행 체계 안에서는 각각 상담심리사 윤리규정과 연구윤리규정으로 분리되어 다루어짐으로서 마치 서로 상관없는 조항처럼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상담심리사 윤리 강령 1조 가항 ‘상담심리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오도되었을 때에는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혹은 ‘상담심리사는 문화, 신념,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연구 윤리 규정 제6조 1항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와 2항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항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와 상당히 일관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비중에서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상담 실무를 하면서도 과학자로서의 태도를 견지하고 상담 연구를 하면서도 상담의 현장을 고려하는 것이다. 과학자의 관점과 상담실무자의 관점은 서로가 배타적인 관점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력 관계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윤리강령과 연구윤리강령은 서로 통합시키는 것이 상담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만, 실무와 연구를 하나의 윤리강령 안에 통합은 시키되 각각에 대한 운영세칙은 별도로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분리된 두 개의 윤리 위원회가 분리된 규정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윤리강령에 기반한 하나의 윤리위원회가 존재하게 되고 그 하위 조직으로서 연구 윤리 분야와 상담 실무 윤리 분야를 나누어서 관리하고 시행세칙만 구분하는 것인데, 상담자의 통합적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세부적 전문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단지 규정으로만 존재하고 단지 몇 편의 교육으로만 존재하는 윤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어떠한 교육 수련 모형을 취할 것인지 어떠한 가치들을 학회의 실질적인 가치로 채택할 것인지에 관해서 학생 회원들을 포함해서 전체 회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학회 차원에서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국상담학회의 경우 윤리적 이슈들에 관해 회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윤리 대회(ACA graduate student ethics competition)를 개최한다(ACA, 2018). 이 대회는 가능할 수 있는 윤리

적 시나리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윤리적 딜레마에 반응할 수 있는 적절한 윤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미국 상담학회와 미국 심리학회는 윤리에 관한 여러 건의 웨비나(webinar) 혹은 중요 자료들을 학회 웹사이트에 업로드 시켜 놓았고, 이러한 자료들은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학회의 회보에는 매달 윤리 칼럼이 게재되며 매년 윤리 보고서가 학회를 통해 공개된다.

자신 내부의 신념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법과 윤리를 위반하고도 법적 처벌이나 윤리적 규탄을 받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법과, 윤리 및 도덕 세 가지 다른 영역을 혼동한 결과에 불과하다(박이문, 2007). 이는 윤리적 쟁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회의 위원회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여서 윤리 위원회 또한 쟁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 한 설명을 받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추천을 해야 하며 위원회가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 해야 한다.

상담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부적절한 상담자의 문제 행동 모두가 급증하는 현재의 상황은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아직 길지 않은 윤리 규정 제정 역사를 감안할 때 수많은 보완점에 대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어떤 형태의 논의이든 학회 차원에서 윤리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자유롭게 열어나가며 운영위원회 주도의 윤리 규정이 아니라 모든 회원들에 의한 윤리 규정으로서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민일보 (2010). “교수가 제자논문 등재때 공동저자로 기재하는 건 잘못”...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940074> 에서 2018년 7월 20일 검색.
- 김영명 (2011). 단일 사회 한국: 그 빛과 그림자. 서울: 이담.
- 김인규 (2018). 대학상담센터 상담윤리 가이드북. 전국대학상담센터협의회. http://www.ccus.kr/notice/notice_2.php?page=view&id=25&tb=pds 에서 2018년 6월 20일 검색.
- 나은영 (1995). 의식개혁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 체면과 동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33-51.
- 남형두 (2009). 표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9816&list.do?pageIndex=1&brdclasscode=&nationcode=&searchText=&servicecode=06&searchTarget=ALL&brdctstatecode=#> 에서 2016년 5월 1일 검색.
- 남형두 (2015). 표절론. 서울: 현암사.
- 동아일보 (2018, 3, 27). 담당 의사에 성폭행당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327/89313062/1> 에서 2018년 5월 27일 검색.
- 박이문 (2007). 성숙사회아카데미 제3회 6강, 윤리의 사회성과 도덕의 실존성.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 <http://www.maturesociety.or.kr/bbs/zboard.php?id=mokyo&no=24>에서 2018년 5월 28일 검색.
- 연합뉴스 (2018, 2, 26). 문 대통령 “미투 운동

- 적극지지 ... 피해 사실 폭로한 용기에 경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 2018/02/26/0200000000AKR20180226108900001.HTML 에서 2018년 5월 27일 검색.
- 이숙영, 김창대 (2002). 상담 전공 대학원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교육학연구*, 40(2), 231-250.
- 임주환 (2016). 한국 내담자 법적 보호 현황. 한국 상담가의 성윤리의식 실태와 내담자 법적 보호 현실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최아롱 (2012). 한국의 상담자 전문교육과정의 적합성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겨레신문 (2013, 12, 13). 악마처럼 보였던 그도 ‘사람’이었기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5291.html 에서 2018년 5월 18일 검색.
- 한겨레신문 (2016, 3, 14). 상담실이 위협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4956.html#csidxc95dcba03e43fc3a5b29d5d30a457a7 에서 2018년 5월 18일 검색.
- 한겨레신문 (2018, 3, 28). “심리상담사가 성폭행” 2년 전 ‘미투’는 왜 응답받지 못했다. <http://www.hani.co.kr/arti/PRINT/837998.html> 에서 2018년 5월 26일 검색.
- 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상담심리사 자격증. http://www.krcca.or.kr/boardManagement/board.asp?bid=bid_12&menuCategory=3 에서 2018년 5월 28일 검색.
- 한국심리학회 (2016). 한국심리학회 윤리규정. <http://www.koreanpsychology.or.kr/aboutkpa/article.asp?page=4> 에서 2018년 5월 27일 검색.
- 한국연구재단 (20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http://www.nrf.re.kr/ethics/](http://www.nrf.re.kr/ethics/board/view?nts_no=71417&menu_no=327&nts_no=&search_type=&search_keyword=&page=)board/view?nts_no=71417&menu_no=327&nts_no=&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에서 2018년 5월 1일 검색.
- 황은성, 조은희, 김영목, 박기범, 손화철, 윤태웅, 임정목 (2014).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https://www.kcse.org/books/files/1F77A55574A4E4C/Manual_for_research_and_publication_ethics_in_science_and_engineering.pdf 에서 2018년 5월 1일 검색.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2014 ACA code of ethics. Retrieved May 27, 2018 from https://www.counseling.org/docs/default-source/ethics/2014-code-of-ethics.pdf?sfvrsn=2d58522c_4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7).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statements. Retrieved May 27, 2018 from <https://www.counseling.org/about-us/social-justice>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8). ACA graduate student ethics competition. Retrieved July 25, 2018 from <https://www.counseling.org/knowledge-center/ethics/aca-graduate-student-ethics-competition>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6).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 Retrieved May 26, 2018 from <http://www.apa.org/ethics/code/index.aspx>
- Baker, D. B., & Benjamin, L. T., Jr. (2000). The affirmation of the scientist-practitioner: A look back at Boulder. *American Psychologist*, 55(2), 241-247.
- BBC (2018, 1, 31).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갖는 의미. <https://www.bbc.com/korean/news-42883969> 에서 2018년 5월 27일 검색.
- Breckler, S. (2005). Ethics for psychological

- scientists. *Psychological Science Agenda*, 19(5). Retrieved May 26, 2018, from <http://www.apa.org/science/about/psa/2005/05/ed-column.aspx>
- Fouad, N. A., Gerstein, L. H., & Toporek, R. L. (2006). Social justice and counseling psychology in context. In R. L. Toporek, L. H. Gerstein, N. A. Fouad, G. Roysircar, & T. Israel (Eds.), *Handbook for social justice in counseling psychology: Leadership, vision, and action* (pp. 1-16).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 Gimpel, G. A., & Merrell, K. W. (2008). 21세기를 위한 학교심리학(이승연과 신현숙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6년에 출판).
- Jellinek, G. (1908). *Die soziaethische Bedeutung von Recht, Unrecht und Strafe(2nd Ed.)*. O. Häring: Berlin.
- Kennedy, D. (2006). Editorial Retraction. *Science*, 311(5759), 335-335.
- Moscovici, S. (2010). 다수를 바꾸는 소수의 심리학(문성원 역). 서울: 뿌리와이파리. (원전은 2010년에 출판)
- Norcross, J., & Castle, P. (2013). Appreciating the PsyD: The Facts. *Eye on Psi Chi*, 7(1), 22-26.
- Pope, K. (2001). Sex between therapists and clients. In J. Worell(Eds), *Encyclopedia of Women and Gender: Sex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the Impact of Society on Gender*, 2(pp. 955-962). San Diego: Academic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18. 06. 05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7. 30
게 재 결 정 일 : 2018. 09. 28

Ethical Principles for Counseling Psychologists, Code of Conduct, and Related Laws, and the Future Prospect in South Korea

Sung-Won Moon

Woosuk University

The growing need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has increased the number of counselors, but quality standards have been largely neglected. As most ethical principles for counseling psychologists in Korea are based on legal regulations, these ethical principles and codes of conduct were explored from a legal perspective. First, the training models and general ethical principles of counseling psychologists from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KCP) were compared with principles from other Korean associations and other countries. Then, related laws were explored to identify insufficiencies in the KCP's ethical principles and code of conduct. These related laws concerned practitioner ethics and scientist ethics. For practitioner ethics, the code of conduct related to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and privacy laws was examined. For scientist ethics, the code of conduct related to the bioethics and research ethics laws was reviewed. Finally, future directions for developing ethical principles are discussed.

Key words : ethical principles, privacy law,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bioethics, research ethics